

2024년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해늘 2차 추가경정예산 총칙

제1조.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'해늘'의 2024년 2차 추가경정예산은 다음과 같다.

제2조. 세입·세출예산 총액은 457,570,908원으로 한다.

제3조. 2024년도의 예산총액은 일반회계(성폭력피해자지원사업)로 구성한다.

제4조. 1)세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.

- (1)보조금 : 420,418,020원
- (2)사업비 : 22,206,000원
- (3)이월금 : 4,477,289원
- (4)후원금 : 3,950,000원
- (5)기타잡수입 : 6,619,599원

제5조. 2)세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.

- (1)인건비:317,678,000원
- (2)업무추진비:90,500원
- (3)운영비:23,075,510원
- (4)시설비:2,880,000원
- (5)교통비:15,500,000원
- (6)사업비-운영비:48,680,228원
- (7)사업비-교육비:5,000,500원
- (8)사업비-사업비:43,914,130원
- (9)사업비-기타사업비:680,000원
- (10)잡지출-잡지출:104,500원
- (10)예비비 및 기타-반환금:67,540원

제5조. 2024년 국도비보조금 및 급여기준이 통보되면 그 기준에 준하여 2024년 예산서를 재조정하여 시설 운영위원회, 법인이사회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 보고한다.

제6조. 예산의 전용은 사회복지법인 재무 및 회계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.

제7조. 본 예산에도 불구하고 별도 또는 추가로 정부(지방자치단체)등으로부터 특정 사업의 예산을 지원받는 경우에는 별도의 규정에 따른다.

제8조. 예산의 변경이나 추가경정예산의 필요가 있을 경우 사회복지법인 재무, 회계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.

제9조. 기타 본 예산의 집행에 관한 사항은 법인의 규정 및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, 기타 상위규범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10조. 기타 필요한 사항